제2022-3회 대학평의원회
2022. 5. 3.(화) 13:20

경남도립거창대학 대학평의원회

회 의 록

경남도립거창대학

경남도립거창대학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▣ 회의개요

○ 개최일시 : 2022. 5. 3.(화) 13:20
○ 장　　소 : 본관 2층 세미나실
○ 참 석 자 : 12명(재적위원 16명)
○ 안　　건 : 1건
1.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일부개정안

▣ 회의내용

▶ 교무학사팀장 : 경남도립거창대학 대학평의원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- 저는 대학평의원회 간사를 맡은 교무처 교무학사팀장 정화순입니다.
-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국민의례, 의장님 인사말씀, 성원보고, 그리고 1건의 안건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.

▶ 교무학사팀장 : 그럼, 지금부터 「2022년 제3회 경남도립거창대학 대학평의원회」를 시작하겠습니다.
-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.
-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.
- 국기에 대하여 경례! / 바로!
-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교무학사팀장 : 다음은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.

▶ 의장(총장) :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평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 심의 안건은 우리대학 학칙 일부개정안으로서, 2023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개편 사항 반영, 시간제등록제, 전공심화과정, 대학선행학습 영향평가,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. 평소 대학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평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

▶ 교무학사팀장 : 대학평의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우리대학 학칙 제71조에 따라 재적의원 16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. 그럼, 지금부터는 의장님께서 2022년도 제3회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의원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.

▶ 의장(총장) : 성원이 되었으므로, 2022년 제3회 경남도립거창대학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.

- 오늘 대학평의원회에서는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일부개정안을 심의·의결토록 하겠습니다.

- 본 안건은 교무처와 사무국에서 각각 제안해주셨는데,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의·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. 회의 진행 방법에 이의가 있으십니까?

▶ 의원들 : 이의 없음.

▶ 의장(총장) : 그럼, 먼저 교무처장께서는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의원(교무처장) :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제안이유입니다.

-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교육부의 2023학년도 전문대학 보건의료계열 입학정원 배정 알림에 따라 우리 대학 2023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개편 사항을 반영하고,

-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우리 대학 시간제등록제운영 활성화 및 전문대학 졸업자 등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 제공을 위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,

- 대학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입니다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제3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의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개편 사항을 반영하고,

- 제22조의1(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) 조항 신설,

- 제22조의2(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) 조항 신설,

- 제58조(시간제등록제)제2항의 20%를 10%로, 제3항의 20학점을 24학점으로 변경하고,

- 별표 1(경남도립거창대학 학위의 종별)의 종별에 농업전문학사, 해당학과에 스마트귀농귀촌학과를 추가하고, 학과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▶ 의장(총장) :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으로 사무국장께서는 학칙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의원(사무국장) : 반갑습니다, 사무국장 신민철입니다.

○ 경남도립거창대학 조직신설에 따른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의 「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」에 우리대학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진로·상담·취업지원 등 대학일자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조직신설을 위한 학칙 일부 개정안입니다.

○ 개정내용은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제8조의11(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치)을 신설하여

- 제8조의11 제1항에 진로·상담·취업지원 등 대학일자리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둔다. 라고 하고

  제2항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에는 전임교원을 임명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.

○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○ 감사합니다.

▶ 의장(총장) :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부터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요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부의장(표현우) : 대학일자리센터는 언제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까?

▶ 의원(사무국장) :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▶ 의장(총장) : 공모사업은 몇 년간입니까?

▶ 의원(사무국장) : 기간은 3년이나, 대학의 중점사항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

▶ 의장(총장) : 참고로 내년에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가 신설되는데, 발전위원장님과 총동문회장님께서는 외부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

▶ 의원(황진희) : 선행학습 영향평가 조항에 대학별이라는 용어를 전형별이라는 용어로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닌지?

▶ 의원(교무처장) : 교육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입니다.

▶ 의장(총장) :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까?

▶ 의원(전체) : 질문 없음.

▶ 의장(총장) :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응답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-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.

-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

▶ 의원들 : 이의 없음

▶ 의장(총장) :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-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경남도립거창대학 대학평의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- 의원님들과 관계자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